

대한 양계협회

소식

농업용 시설 대체농지 조성비 면제와 불법전용농지 양성화 조치 건의

본회와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는 정부에 농가가 설치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 면제와 무허가축사를 포함한 불법전용농지에 대해 양성화 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전국의 100만 양축농가 일동은 그동안 크고 작은 가격파동을 수없이 겪으면서도 인내심과 긍지를 갖고 국민의 제 2식량인 축산물을 생산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국제화 시대에 양축농가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생산성 및 상품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각종 제도 및 정책의 모순으로 생산비가 가중되는 등 우리 양축농가가 받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양축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 판단되어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수차례 걸쳐 건의한 바 이는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근자 대내외적인 수입개방 압력과 우루과이로운드 농산물 협상을 앞두고 우리 양축농가들은 항상 불안한 가운데 생업을 포기하느냐 마느냐 하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양축농가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하여 정부가 앞장서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축산시설을 위한 농지 전용 허가시 과거 농가에게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부과치 않도록 된 규정을 개정하여 대체농지 조성비를 부과(50%)토록 하는 등 생산비를 가중시키는 시책을 강구 추진하고 있음은 심히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하며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시어 양축농가가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농가가 설치하는 농업용 시설(축사 및 부대시설 포함)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 면제 요청

가. 농가가 설치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 부과규정의 협약 및 문제점

(1) 과거(90.8.17자 농림수산부 훈령 제 713호 공포 이전)에는 대체농지 조성비 부과 규정(농림수산부 훈령 제 691호) 제 3조 제 2항 규정의 별표 2에 의거 농가가 농업용 시설(허가 대상농지)을 설치하는 경우에 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전액 면제도록 되었으나 90.8. 17자 농림수산부 훈령 713호(농지전용 업무처리심사 세부규정) 공포에 따라 농가가 설치하는 농업용 시설 에 대하여도 90.9.10부터 다음과 같이 대체농지 조성비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음.

(2) 양축농가가 수입개방 및 우루과이아운드 협상에 대처하기 위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시설을 확장 또는 이전 신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축사의 건

축이 가능한 대지 또는 잡종지를 새로이 확보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불가피하게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이용하여 축사를 설치코자 하는데 대체농지 조성비를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됨.

(3) 축산 장기발전 계획상 생산비를 가중시키는 모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토록 되어 있으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관련한 농림수산부 장관께서 TV에 출연하여 농어촌 발전대책을 발표함에 있어 농업용 시설을 위한 농지 전용절차를 완화하였다고 발표해 놓고 내부적으로는 과거에도 없던 제도를 훈령으로 제정하여 농가의 농업용 시설(축사 및 부대시설 포함)을 위한 농지 전용허가시 대체농지 조성비를 부과토록 한 것은 이를 배반적인 조치로서 도저히 이해 할 수 없고 양축농가를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음.

(4) 정부에서는 수입개방 및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대처 방안으로 점진적으로 부업 양축농가를 전업 농가로 육성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부업 양축시설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만 대체농지 조성비를 면제토록 해 놓고 전업 시설 규모인 3,000m² 이상은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토록 조치(생계유지 차원으로도 현재 실정으로 보아 10,000m²는 되어야 함)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전업 양축농가를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됨.

(5) 우루과이라운드와 별 관계가 없는 양어장, 양만장 시설 등을 위한 전용 허가사는 93.12.31까지 대체 농지 조성비를 전액 면제해 주면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 된다면 즉각적인 피해를 당하여야 하는 양축시설을 위한 농지 전용시는 대체 농지 조성비를 부과하고 있음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생각하며 더구나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만 시설을 5년 이내에 확장 시는 기존의 전용시설 면적까지 포함하여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음은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됨.

구 분	감 면 기 준
농업진흥지역안 또는 절대농지	○ 1,500m ² 이하 전액 면제 ○ 1,500m ² 초과시 50%감액
농업진흥지역밖 또는 상대농지	○ 3,000m ² 이하 전액 면제 ○ 3,000m ² 초과시 50%감액

* 시설을 5년 이내에 확장시는 기존 전용면적을 포함.

나. 견 의

농가가 농업용 시설(축사 및 부대시설 포함) 설치를 위해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면적에 관계없이 대체농지 조성비 전액을 면제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불법 전용농지(무허가 축사 포함) 양성화 조치

가. 불법 전용농지(무허가 양계장) 현황 및 문제점

(1) 전축사(간이축사 포함)의 80% 이상이 불법 전용농지에 설치한 무허가 건물임.

(2) 83년도에 정부의 무허가 건물 양성화 조치에 따라 건물은 양성화 되었으나 부지(농지)는 아직까지 불법 전용농지로 양성화되지 않은 것이 상당량 있음.

(3) 수입개방에 대비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시설의 개선 또는 확장을 하여야 하나 기존의 시설이 무허가 건물(불법 전용농지)이므로 시설의 개선 또는 확장을 할 수가 없음.

(4) 근자 폐기물 관리법의 시행은 물론 환경보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나 기존의 축사가 무허가(부지는 불법 전용농지)이므로 축산폐수정화 시설의 건축허가(농지 전용허가 포함)를 받을 수 없어 부득이 무허가로 정화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무허가라는 이유로 환경 당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정화 시설 미설치로 고발을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5) 현재의 우리나라 축산은 대개의 경우 그 규모가 영세하고 그 경영자는 허가 절차를 잘 모르거나 농지 관련법 등의 절차가 복잡하여 의식, 무의식 중에 생업 수단의 일환으로 무허가로 축사(80%이상이 철제 파이프 하우스식 간이축사임)를 건축하여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이는 결코 고의적으로 범법을 한 행위는 아니었으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는 결코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양축농가는 한사람도 없으며 항상 죄책감을 갖고 불안한 가운데 생업수단으로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치부성으로 한 것은 절대로 아니며 현실 여하간에

서 축산업을 치부성 사업으로 인정하기는 더 더욱이 불가능한 실정임.

(6) 과거에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축사는 농업용 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특히 간이 파이프 축사는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농지 전용허가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업 수단으로 농지를 불법 전용하게 되었으며 단위당 소득이 취약하기 때문에 경영 규모의 확장으로 소득을 증대시켜 생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법 전용면적(무허가 축사포함)이 커졌을 뿐이지 결코 치부성 사업으로 한 것은 아님.

(7) 불법 농지전용 및 무허가 축사의 소유자(전 양축농가의 80% 이상)는 대개의 경우 행정 당국으로부터 사직 당국에 고발되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거나(징역형을 받은 사람도 있음) 현재에도 계속 철거(원상 회복)를 강요당하고 있어 항상 불안한 가운데 생업 유지를 위하여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임.

(8) 88. 11월에 농림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시달린 농지 불법전용역제 및 대책(농지 27210-2039-88. 11. 22)에 의하면 농사 및 생계 유지를 위하여(민농지 01254-1210-89. 8. 19)에 의하면 농사의 개념에는 축산업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음) 부득이 농지를 전용하여 원상복구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는 양성화 조치도록되어 있으므로 양축농가도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므로 대호에 의거 양성화 조치 토록되어 있으므로 양축농가도 이 경우에 해당 된다고 생각되므로 대호에 의거 양성화 조치(주인)를 받고자 하였으나 지방 행정 당국(허가청)에서 전기(4) 내지(6)항의 사유는 고려치 않고 축산업을 치부성 사업으로 간주하고 원상 복구만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임.

(1안) 특별법을 제정하여 89년 이전에 불법 전용 농지(무허가 축사 포함)는 전부 양성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안) 농발법에 의거 전농지를 지역별로 지정고시(농업 진흥지역, 농업보호구역 등)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건물을 농지에서 제외(물론 지역고시에서는 포함되나 필지별 지정고시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 89년 이전에 불법 전용농지를 양성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안) 전기 (1)-(2)안의 조치가 불가능 할 시 축산업은 현재까지 소득수준으로 보아 생업 차원의 수단일 뿐이지 치부성 또는 기업형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확실한 정의를 내려 주시어 88년도에 농림수산부장관께서 시달한 농지 불법전용 억제 및 대책에 의거 양성화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계업, 신용도에 따라 어음할인혜택가능 축산업, 기업체종합평가 기준 마련돼

축산업이 사육규모가 증가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계사건축 및 시설개선, 계분처리시설, 사료비를 포함한 운전자금의 단위가 높아지고 있어 본회 회원을 포함한 많은 양계인들이 기거래하고 있는 시중은행에서 여신수혜(어음할인) 혜택을 받으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거래은행에서는 축산업에 대한 기업체 종합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축산업은 적격업체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본회가 89년말부터 한국은행에 「어음할인제도에 대한 문의 및 견의」를 하여 '90년 기업체 종합평가에 축산업이 추가되어 항후 축산업자가 발행한 어음이라도 재할인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양계업자도 거래은행의 신용도에 따라 직접 발행한 어음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제6회 닭고기요리솜씨대회 지역대회 개최

전국대회는 내년에 실시

제6회 전국 닭고기요리솜씨대회 지역대회가 부산, 서울, 대전, 제주, 전주, 광주에서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8일까지 개최되었다.

지역대회는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영남지역은 8월 21일 부산호텔에서, 서울·경기지역은 8월 24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중부지역은 9월 4일 대전

시민회관, 제주지역은 9월 7일 제주 오리엔탈호텔, 호남지역은 9월 11일 전주 코아백화점과 9월 18일 광주 YMCA 회관에서 개최되어 총 442점이 출품되어 77점이 입상하였다.



입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중부지역대회

- 최우수상 : 장영준(닭살깻국냉채)
- 우수상 : 조복원(닭살육회)
- 장려상 : 권순주(통닭수제비), 이용연(닭튀김과 카레소스), 정분지(닭고기엿장조림), 백순희(닭살인 삼튀김), 신정은(페백닭)

○ 제주지역대회

- 최우수상 : 허영운(궁중닭찜)
- 우수상 : 장해자(닭고기표고찜)
- 장려상 : 고정자(토계탕), 김자인(닭메밀전병), 현옥자(닭파인구이), 이추자(닭고기엿), 김미경(닭과 제주산호박볶음)

○ 호남(전주)지역대회

- 최우수상 : 소병숙(치킨미트볼)
- 우수상 : 박향숙(닭튀김양념구이)
- 장려상 : 허궁자(닭고기양배추찜), 김정심(닭고기토란탕), 류현희(닭고기완자튀김), 박순옥(닭고기버섯산적), 김정숙(닭살탕)

○ 호남(광주)지역대회

- 최우수상 : 강연숙(닭살찜)
- 우수상 : 김순례(통닭매운탕)

- 장려상 : 김연심(닭탕수), 유명근(왕만두찜빵), 이승순(닭고기계란말이), 박승옥(닭고기구이와 우유소스), 박복희(치킨라이스피자)

배합사료가격 인상 억제 협조요청

사료협회에 인상업체 협원토록 요구

본회는 지난 11일 한국사료협회에 배합사료가격 인상을 억제할 것과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다.

양계업계는 국내외적인 어려움으로 긴박한 처지에 놓여 있으며 또 육계가격은 복중성수기를 지나면서 육계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하여 어려움은 더욱 더 가중되고 있음에도 국제경쟁력 강화로 생존권을 사수코자 필사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배합사료가격 인상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어 지난 5일 전국 지역대표자 대책회의를 갖고 인상요인이 없음에도 사전홍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서 기업의 횡포로 밖에 간주할 수 없으므로 사료협회의 해명 및 인상을 자체토록 회원사에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만약 양계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인상을 강행한다면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하였다.

다 음

○ 국제곡물시세 등 제반 요건으로 보아 배합사료 가격을 인상할 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인상요인이 다소 있다손 치더라도 현재의 배합사료 가격에서도 각 회사가 특정업체 또는 특정인에게 경쟁적으로 할인 판매를 하고 있으므로 각 회사가 할인판매 금지 등 경영의 합리화로 인상요인을 흡수한다면 굳이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각 사료회사가 일률적으로 인상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기 바람.

○ 배합사료가격의 인상요인이 있다하더라도 인상

시기가 적절치 못하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양계인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 등 양계인의 입지를 향상시키는데 공동 대처한다는 높은 뜻에서 배합사료 가격의 인상을 자체(귀 인상된 업체는 환원)토록 귀협회 회원사에게 홍보 또는 주지시켜 양계인의 뜻이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 만약 배합사료 가격을 인상치 않으면 안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인상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홍보함과 동시에 전 양계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한 후 각 사료회사별로 거래하는 양계인과 완전 합의하에 인상여부를 결정토록 조치(귀협회 회원사에 홍보 또는 주지 등)하여 주기 바람.

육계 수매비축 건의 육계가격 폭락과 장기불황 우려

본회는 9월 들어 소비의 급격한 감소로 산지 육계가격이 생산비에서 크게 밀도는 가격(kg 당 600~630원)으로 폭락하였고 또한 장기불황의 조짐이 있어 농림수산부에 육계를 수매비축토록 지난 10일 건의하였다.

금년도에는 육계가격이 외형적으로 좋은 시세를 유지하여 왔으나 종계 생산성 저하 등 복합적 요인으로 병아리가격이 사상 유래없는 고가(수당 400~500원)대로 거래되어 이에 따른 생산비 과중으로 육계생산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9월 들어서 육계가격이 폭락하였고, 육용병아리 생산잠재력 등으로 보아 불황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어 축산진흥사업계획에 의거 육계수매비축 자금을 방출하여 계열주체와 축협으로 하여금 육계를 수매비축하여 육계가격을 안정시키도록 건의하였다.

또한 최근 동향으로 보아 육계가격이 폭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아리가격이 400원을 웃도는 시세가 형성되고 있음을 볼 때 수매를 한다하여도 육계가격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입찰률을 자

제해 가는 육계인의 각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따라 농림수산부는 지난 24일 닭고기 수급조절자금 25억2천만원을 계열주체에 지원했다. 축산진흥기금 중 닭고기 수급조절자금으로 연리 8%(양계조합은 3%), 응자일로부터 1년후 상환하는 조건이다.

업체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체명	사업량	지원액
서울·경기 양계조합	143천수	200백만원
대한브로일러	264	370
천호인터그레이션	322	450
한일식품	214	300
영육농산	214	300
전북 양계조합	143	200
하림식품	357	500
유성농장	143	200
8개소	1,800	2,520

닭고기 소비홍보 포스터 공모 심사 우수상에 박승렬씨



양계산물 소비홍보 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90년 닭고기 소비홍보 포스터 현상공모에

서 박승렬씨(서울 용산구 남영동)가 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닭고기에 국한해서 실시한 금년 공모에 총 56점이 출품되었으나 응모수에 비하여 최우수상에 해당하는 작품이 없어 심사위원 합의로 최우수상은 시상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대학 응미과 이인자 교수와 디자인뉴스 김수경 사장이 심사하였으며 “닭고기는 계란 보다 조형화 시키는데 어려운 점이 커 컨셉이 분명하지 않고, 일러스트레이션과 색채의 조화가 부족한 작품이 많았다”고 심사평에서 지적되었다.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90닭고기소비홍보포스터공모 입상자

입상명	성명	주소
최우수상	해당작품없음	
우수상	박승렬	용산구 남영동
입선	김문수	전주시 효자동 한선기획
입선	김정식고영철	대전시 한남대 응미과
입선	김인구	용산구 서계동 (주)농심선진실
입선	김옥선	대전시 동구 성남1동
입선	류차현	대전시 중구 신일여중
입선	성미옥	대전시 한남대 응미과
입선	박수정	대전시 서구 탄방동

축산법개정법률(안)에 대해 본회 의견제시 닭고기·계란 가격안정 위한 제도 마련토록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수입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한 생산성 제고, 구조조정, 유통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축산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의견을 농림수산부에 제시하였다.

본회의견 내용은 축산법 개정안 제34조(안정기준 가격대의 결정·고시) 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할 지정축산물에 대해 닭고기와 계란을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하였다.

제35조(가격안정조치) 제4항에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을 수매·비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현재 등급제 실시를 준비중인 쇠고기, 돼지고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며 등급제를 실시하지 않는 품목인 닭고기나 계란가격이 폭락하여도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차원의 수매비축을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35조 제4항을 삭제하고 수매비축품목은 별도 농림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도록 하여 유통성 있게 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중부지역 집중폭우 양계장도 피해커 본회 양계장 수해의연금 모금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폭우로 송윤식 이사를 비롯한 17명의 본회 회원의 피해가 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계사가 침수되어 닭이 폐사하거나 축사 등이 붕괴되어 회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비회원들의 피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회에서는 이규성 전무가 가옥과 농경지 침수 피해를 당한 송윤식 이사를 방문하여 위로와 함께 금일봉을 전달하였다. 또한 본회 임원과 지부, 본회에서는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 한다는 뜻으로 수재의연금을 모금·전달하기로 하였다. 본회는 이 외에 본회 회원이나 뜻있는 분의 수재를 당한 회원

을 돋기 위한 자발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수재의연금을 보내주실 분은 본회 농협구좌(097-01-000953, 예금주 : 대한양계협회)로 송금하면 된다.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11월 2, 3일 육계인대회

9월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강석부)가 지난 25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분과위원회에서는 계열화에 대한 집중 토론으로 생산자 주도 계열화의 경우 협동조합으로 하는 것과 주식회사 형태로 하는 것에 대해 장단점을 검토했다. 육계생산자들이 모여 계열화사업의 경제 행위를 할 때는 협동조합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여러가지 요인을 분석할 때 연말의 육계경기는 어렵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예전되는 장기불황을 전양계인에게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90년 육계인대회를 오는 11월 2일과 3일 1박 2일로 경주 도투라월드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 이날 수입개방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회원자는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배합사료가격 인상 강력히 저지키로

9월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최준구)가 지난 17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연휴가 길기 때문에 계란가격의 하락이 예상되므로 생산성이 떨어진 계군을 미리 도태를 하여 계란가격의 하락과 2중시세를 막도록 하기로 했다. 또 지난 8월 난가 하락시 콘폭의 2중시세를 줄일 수 있었으나 양계인의 단합부족으로 2중시세가 여전히 지속된다고 분석하고 양계인의 단합이 필요하다고 했다.

계란의 상품성 향상을 위해 1회용 난좌 사용을 검토하여, 1회용 난좌는 개당 60원 정도에 생산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점차적으로 1회용 난좌 사용을 수용키로 하였다. 또 사료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인상을 강력하게 저지하기로 결의하고, 인상저지에 따른 사료질의 저하가 있을 때는 본회에 연락하여 조치키로 결의하였다.

한편 매월 15일 개최하였던 월례회를 앞으로는 매월 16일 오후 2시로 변경하여 개최하기로 하였다.

부산·경남지부 육계인단합대회 개최

14, 15일 충북 속리산에서



본회 부산·경남지부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도종호)는 지난 14, 15일 충북 속리산에서 부산·경남지역 육계인단합대회를 개최하였다.

부산·경남지역 육계인의 단합과 친목을 위해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120여명의 육계인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본회에서는 이규성 전무가 참석하였다.

첫날 행사는 토론회와 오락시간으로 이루어졌으며, 폭락하는 육계시세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며, 본회 이규성 전무와 강재명 과장이 우루과이라운드와 농지전용에 관한 설명과 육계경기전망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다음날인 15일 속리산 법주사 관광과 보물찾기 등 즐거운 단합대회를 가졌다.

배합사료 가격인상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나라 축산업은 대내외적인 수입개방 압력과 불안정한 경영여건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그야말로 위기적 상황에 직면한 시점에서 일부 배합사료 업체들의 전격적인 배합사료 가격 인상조치는 우리 양축 가들에게 큰 충격적인 동시에 경영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킴으로써 다시 한번 실의에 젖게 하고, 영세 양축농가의 축산포기와 도산을 부채질하고 있다.

더욱이 배합사료업체의 인상요인만 강조할뿐 제반 국제곡물가격 인하 추세에 따른 가격인하요인은 일체 무시한채 일반적인 배합사료 가격인상을 단행하는 처사는 대농가 설득명분도 없거니와 양축가의 실상을 외면한채 배합사료업체의 영리에만 급급한 졸속한 발상이 아닐 수 없어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현재 우리 축산업은 시장개방 압력과 우루과이 농산물협상을 눈앞에 두고 축산업 존속여부에 대한 불안심리로 생업의 안정을 기하기조차 어려운 혼란이 일고 있고, 이러한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우리 양축 가를 주체로 하여 정부가 유관산업 종사자, 학계, 소비자 모두가 합심 단합하여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명백한 사안이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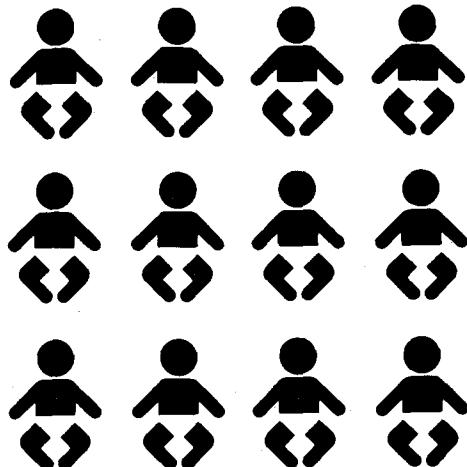
다소의 어려움이 내재하더라도 함께 동참하여 우리 축산업의 문제를 타개하고 공존의 방안을 모색키 위해서는 배합사료 가격을 종전대로 즉각 인하 조치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 배합사료 가격을 인상한 업체는 즉각 가격인상을 철회하여 종전대로 흰원조치토록 하라.

○ 만일 우리 축산농가의 간곡한 권유를 무시한채 계속 가격인상을 고집하여 전반적인 배합사료 가격 인상을 유도한다면 우리 축산농가들은 특정업체제품의 불매운동 등 어떠한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밝힌다.

사람은 하나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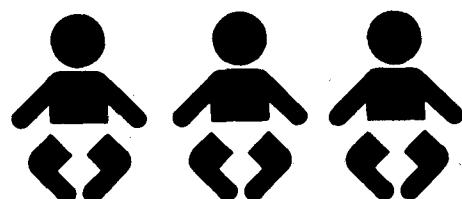
낳아도 허리가 빠근한데



매일 알을 낳는 산란계, 뼈골이 빠집니다. 산란수명과 항병력을 키워주는 좋은 영양제 선택이 중요합니다.

한번 쓰신 분은 오래 선택하는
페이비언 처방의 산란촉진제

풀리타크



중식 과학축산

서울사무소 : 용산구 한강로 2가 316-1
대표전화 : 795-2361 (~5)